

호치민시한국교육원 시설물 사용에 관한 규정

제정 2020. 6. 10.

개정 2023. 7. 1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대한민국 교육부 부설 호치민시한국교육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및 사용자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원칙) 교육원장은 원내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시설물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대한민국 정부 및 각종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라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2. 총영사관, 한인회, 코참, 민주평통자문위원회 등 기관의 공식적인 행사로 사전 협의된 경우 (단, 스포츠 동호회, 종교 단체, 향우회, 동창회, 회사 등에서 체육활동이나 친목모임 성격의 경우는 이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3. 현지 교육 기관(교육청 및 산하기관, 대학 등) 및 소속 기관(동아리 등 포함)의 교육 목적 활용

제3조(이용의 제한 및 허가 취소) 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허가한 시설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자 수칙을 준수 하지 아니할 때
2.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4. 사용허가 받은 권리를 양도한 때
5. 특정단체가 정기적으로 사용하여 다른 단체의 균등한 사용을 제한받을 때
6. 교육원 교육활동 및 관리상의 사유로 부득이할 때

제4조(이용 수칙) 시설물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을 사용하는 교민들과 학생들의 불편 및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2. 시설물이 파손·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3. 교육원 내에서는 음주, 가무, 취사, 소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하며 허가된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5. 허가된 차량 이외에는 건물 내에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6. 행사 후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고 쓰레기는 수거하여 외부로 반출한다.

제5조(개방시기) 시설물 개방 일자, 시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일자 : 교육원 자체행사 및 수업, 시설물 공사 기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한 날
2. 시간 : 교육원의 교육과정 활동을 실시하지 않는 시간
3. 공휴일 및 주말(토, 일요일)은 건물 관리상의 어려움으로 가급적 개방하지 않는다.
(특별한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리자가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

시설물을 이용하고자하는 자는 사용 7일전까지 사용내역 등을 명시한 신청서 및 서약서 (서식 1)를 제출하여 교육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교육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이용자의 책임)

1.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나 사용허가를 받은 단체는 이용 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용중에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나 사용허가를 받은 단체는 사용 중에 발생하는 기타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8조(사용자의 설비)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사용 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교육원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치나 철거에 따른 경비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단, 건물구조에 변형을 줄 수 있는 설비 설치는 제외함)

제9조(사용료) 무료로 사용 가능하나, 3시간 이상 장기 사용 및 과도한 전자기기 사용 등의 경우 전기료 등의 실비는 교육원장의 판단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2020.6.10.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2023.7.14.부터 시행한다.

시설물 사용 허가 신청서

청 인	성 명		전 화	
	주 소			
사용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간)	
사용인원				
기 타				
<p>시설물 사용에 관한 제반 규정을 지킬 것을 서약하고, 귀 원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 청 인 : (인)</p> <p>호치민시한국교육원장 귀하</p>				

서 약 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박 일)까지 본 교육원 시설을 이용하는 동안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소지품 분실이나 준수사항 불이행 등 시설물의 부주의한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당 교육원에서 책임지지 않으니 물품관리 및 시설물 사용에 각별히 유의합니다.(교육원 내 모든 비품은 용도 외 사용금지 및 외부 반출금지)
2. 교육원 시설물 내 음료(물제외)를 포함한 음식물 반입은 하지 않으며, 발생된 쓰레기는 반드시 깨끗하게 처리합니다.
3. 퇴실 시설물을 깨끗하게 청소하여 주시고, 실내의 비품은 원 상태로 정리합니다.
4. 교육원 시설물 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란행위를 하지 않도록 합니다.(시설물 내 흡연금지)

20 년 월 일
 소 속 :
 성 명 : (서명)